

긴급 입찰 사유서

1. 사업 개요

- 가. 사업명: 국제우편물류센터 도착장 물류장비 재배치
- 나. 예산액: 39억원 (부가세 포함)
- 다. 사업기간: 2026년 11월 ~ 2027년 11월(13개월)

2.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

가. 법적 근거: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5조 제4항 및 제5항

【 국가계약법 제35조제4항 및 제5항 】
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.
 - 2.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- 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.
 - 1.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나. 긴급입찰 사유

- 우정사업본부는 관세청 ‘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자동분류장치 도입’ 사업 진행에 따라(현재 입찰공고 중), 수입 도착우편물의 통관 및 구분 작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장비의 단계적 철거, 임시작업장 구축, 검사센터 연계컨베이어 설치 등 물류장비 재배치를 추진하려고 합니다.
-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관세청 사업과의 연계가 필수적으로, 관세청 일정에 맞춰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자 선정이 필요합니다.
- 또한, 해당 사업은 금년도 말까지 장비 철거, 임시작업장 구축 설계가 완료되어야 예산이월을 방지하고 사업예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.
- 위와 같이, 국가기관 사업과의 일정 조정,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 및 예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을 긴급입찰로 진행하고자 합니다.

우정사업조달센터장

